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가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(가상자산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방지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(2026/10/1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 사항이 시행(2026.10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—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

2) 주요 내용

□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(제1조, 제3조)

—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,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

□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신설(제5조)

—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고시

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말함

□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됨에 따른 규정 정비(제6조, 제9조)

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됨에 따른 규정 정비

3) 관련 규정 개정

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(2026/10/1 개정 · 시행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,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—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(제1조, 제5조, 제6조,제8조)

-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,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